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행 2014.5.19] [대법원재판예규 제1469호, 2014.5.12,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34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라 한다)은 별표1중 적용대상사건란의 기재와 같다.

② 이 규정은 [별표 2]중 법원명란에 열거된 각 법원·지원·시군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2006.11.17. 제1099호)

**제3조(송달사무취급자)** 사건과에서는 과장이 송달사무취급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당사자)** ① 송달료는 그 사건의 당해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지위에 있는 당사자(이하 적극적당사자라고 한다) 예컨대, 원고·반소원고·독립당사자참가인·상소인 등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극적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

③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송달료가 소요되는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사건의 종결 후에 송달료가 소요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5조(송달료의 공동사용)** ①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 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② 사건의 계속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이하 반소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과 그에 관련된 면책사건은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장 송달료의 납부

**제6조(예납을 필요로하는 경우)** ① 적용대상사건에 관하여 당해심급의 개시를 구하는 기본적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화해신청 등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 또는 소송의 일부를 이송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로서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도 같다.)에는 즉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송계속중의 중간적·부수적신청 예컨대, 보조참가신청, 증거의 신청 등을 하거나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그 송달료를 따로 예납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납기준)** ① 납부인은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사건의 송달료를 별표1 중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따라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기준에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적절한 납부기준을 정하여 안내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적용대상사건 중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②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과 함께 이를 교부받는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송달료납부)** ① 규칙 제3조의2 제2항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② 규칙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납은행)** 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수납은행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적용대상사건의 소장 또는 신청서(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 상고, 항고(준항고 포함),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서의 작성방식)** 송달료납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 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다. 삭제(1999.03.30 제709호)
2. 납부연월일
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가 "전산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한다.

**제11조(관리는행으로의 송금)** 수납은행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료를 수납한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송달료를 송금하도록 한다.

**제12조(관리은행)**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관리은행은 [별표 2]와 같다.

### 제3장 접수

**제13조(납부서 등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이하 상소장등 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방법)** ① 적용대상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송달료납부안내서(전산양식 A1235)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접수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자과 접수번호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현금 또는 우편환이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현금 또는 우편환을 해당 수납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아 당해 소장, 상소장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영수증은 사건담당자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인이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우표가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우표 중 반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달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제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고 당해 소장, 상소장 등의 여백 또는 뒷면에 우표반환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1.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
2. 발송송달부(전산양식 A1232-1)
3. 우표처리송달부(전산양식 A1473)
4. 집행관송달부(전산양식 A1482)
- ② 우표를 붙이지 아니한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발송송달부를, 우표를 붙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우표처리송달부를, 그 외의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우편송달부를, 집행관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집행관송달부를 각 출력하여 사용한다.
- ③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에는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상소기록을 우편으로 상소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에는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확정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우편송달부 등의 전산출력)** ① 사건담임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 결제를 위하여 해당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사건담임자가 송달물에 우표를 붙여 송달할 경우에도 우표처리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표처리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사건담임자가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여야 하고 송달물과 집행관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송달촉탁서를 집행관에게 우편송달하고 집행관송달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당 관리은행 및 집행관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25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26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27조(우편송달부 등의 제출)** ①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송달물과 함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부 받은 송달부 전부를 각 법원별 발송우체국 중 해당 우체국(이하 해당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송달을 실시한다.

- ② 해당 우체국은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에 각 요금후납 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 ④ 해당 우체국이 송달사무취급자로부터 우표처리송달부를 교부받은 때에는 송달물에 소정의 우표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당 우체국에서 이를 보관한다.
- ⑤ 제1항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요금의 감액취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요금의 지급준비)** ① 제27조 제3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 ②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신명세를 전송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정보수신일자별로 해당 정보수신요금을 출금하여 정보수신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 ③ 집행관으로부터 송달실시결과를 통지받은 촉탁법원은 송달결과입력일자로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집행관송달요금을 출금하여 집행관송달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 ④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과 해당 정보수신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
- ⑤ 해당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 또는 총 정보수신요금과 제3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 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
- ⑥ 납부인이 제3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대납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대납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요금의 지급)** 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신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이 해당 우체국 또는 통신중계회사에

지급한다.

- ② 집행관송달요금은 해당 관리은행이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전송받은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집행관이 소속한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집행관에게 지급한다.
- ③ 대표집행관은 해당 관리은행에 집행관송달요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송달실시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휴대전화를 이용한 기일통지 안내 등)**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소장 또는 각종 소송서류 등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 또는 사건진행 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전산양식 A1412)를 제출한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건의 기일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정보수신일자의 다음날까지 법원별로 구분하여 정보수신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정보수신의 요금결제금액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인터넷을 이용한 팩스 사용 등)** ① 법원은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예납의무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9조의2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팩스전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의4(준용규정)** ① 법원경위송달요금의 경우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관송달요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관송달부"는 "법원경위송달부(전산양식 A1483)"로 본다.

- ② 법원경위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경위송달요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번호를 송달실시 전까지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 송달료의 추가납부**

**제30조(송달료잔액의 확인)** ① 사건담임자가 송달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송달료잔액이 당해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드시 추가납부를 받은 후 당해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송달료잔액의 통일)** 법원의 송달료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전산양식 A1237)에 해당 과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하며, 관리은행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 ① 사건담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제28조 제4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2. 제30조 제1항의 확인결과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일정금액이하가 되어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의 비고란에 "추납요"표시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종결시까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은 언제든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③ 과거 환송(이송)된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새로이 송달료의 납부가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를 명하되 그 비용은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3조(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작성방식)**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원코드"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법원의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성명"란에는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이미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중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납부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되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4. "추가납부금액"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최초의 송달료납부시 송달료잔액의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부인도 송달료추가납부시에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예금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및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예금계좌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종결전까지 법원별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 제34조(송달료의 추가납부)** ① 제3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를 받은 납부인은 지체없이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예납·추납)납부서의 추납 부분에 ○ 표시를 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건과장은 주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의 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장 송달업무 변경등록**

- 제35조(이송법원의 조치)** ① 사건을 이송(과기이송 제외)하는 결정(민사조정사건 또는 가사조정사건이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이행되거나,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때, 민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조정예 회부된 때를 포함한다)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일부이송인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송달료를 수이송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새로이 납부하여야 함을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송받은 법원의 조치)** ① 제35조의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수이송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일부를 이송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재배당의 경우)** ① 사건이 재배당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배당 하는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정합의(단독)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한다.
  2.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재정사건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한다.
- ②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나 사건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재판부만 변경된 경우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판부변경등록만을 한다.

**제9장 사건의 종결등록 및 송달료 잔액의 환급**

- 제38조(주소·성명의 변경확인)** ① 사건의 당해 심급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이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기재된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확인결과 납부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전산등록"란의 "기타"란에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쌍불취하간주시의 종결등록)**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1월내에 기일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1996.01.24 제467호)

- 제41조(제1심의 경우)** ①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건 또는 송달료 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따로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개설은행이 송달료관리은행 본·지점인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당해 사건번호가 표기되도록 하고, 송달료관리은행 이외의 은행인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 되도록(예컨대 2012타경1234인 경우에는 "송120001234") 한다.
- ③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

인한 해당 관리는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2조(제2심의 경우)** ①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당자 및 해당관리는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당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 관리는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제3심의 경우)** ①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당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관리는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당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당자 및 해당관리는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송달료입출명세서의 전산출력)** 사건의 종결등록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에서 전산으로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4조(송달료환급절차)** ① 송달료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는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송달료잔액 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공무원증, 운전면허증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는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송달료 관리는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유선신청 등 방법에 의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는행 전국점포는 사건종결등록 또는 송달료 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소장 또는 상소장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를 반환하고 송달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송달료를 수납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는행 전국점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등으로 송달료를 여러 건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그 중 잘못 납부한 건이 있어 이를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 잔액 상태가 변경된 것은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제45조(납부인이 다수인 경우의 환급)**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료를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그 송달료잔액을 다수의 납부인에게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방법은 납부자가 각각 선택한 잔액환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46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① 해당 관리는행은 사건종결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말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해당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장부의 정리**

**제47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48조** 삭제(2012.12.03 제1406호)

**제11장 우표납부시의 특례**

**제49조(우표납부시의 특례)**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 송달료의 납부, 보관, 출급, 환부, 국고귀속, 장부보존 등에 관하여는 시·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에 따른다.

부칙 <제1469호, 2014.5.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5조제3항과,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		송달료 및 수송달자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
	민사항고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카합, 카단)		8회	"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의 제외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은 3회)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카기전)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3회	신청인, 피신청인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 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3회	신청인, 검사
	회생합의사건(회합)	4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회생단독사건(회단)	4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하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 (채권자수×5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국제도산사건(국승,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2. 행정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상대방
3. 선거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호)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4. 특수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5. 특허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호)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상대방
6. 가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12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3회 [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라류 4회(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인 등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8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10회)	
		마류 12회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7. 호적	호적비송사건(호파)(과태료사건은 제외)	6회	신청인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 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10.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 제1심사건	5회	구제청구자, 수용자
	인신보호 항고사건	3회	항고인, 상대방
	인신보호 재항고사건	3회	재항고인, 상대방
	임시해제신청사건	3회	신청인, 상대방

[별표 2]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명칭			수 납 은 행	관 리 은 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법원			
대 법 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법조타운지점	100
서울고등법원			"	"	200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춘천)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춘천지점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지점	201
대전고등법원			" 또는 하나은행 새둔산지점	대전법원지점	600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청주)		신한은행 전국점포	청주법원지점	601
대구고등법원			" 또는 대구은행 법원지점	대구법원지점	300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창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 경남은행 창원법원지점	창원중앙지점	401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창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창원지방법원출장소, 경남은행 창원법원지점	창원중앙지점	401
광주고등법원			" 또는 광주은행 법원지점	광주법원지점	500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제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제주중앙지점	501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전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주지점, 전북은행 전주법원지점	전주지점	502
특 허 법 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대전법원지점	7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조타운지점	210
서울동부지방법원			"	동부법원지점	211
서울남부지방법원			"	남부법원지점	212
서울북부지방법원			" 또는 NH농협은행 북부법원지점	도봉동지점	213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서부법원지점	215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법원지점	214
		가 평	" 또는 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지점	214803
		남양주	" 또는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	구리금융센터지점	214804
		연 천	" 또는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의정부법원지점	214805
		철 원	" 또는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	의정부법원지점	214806
		포 천	" 또는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	의정부법원지점	214802
		동두천	" 또는 NH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	동두천지점	214808
		고 양	신한은행 전국 점포	고양법원지점	214807

명칭			수 납 은 행	관 리 은 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과 주	” 또는 NH농협은행 과주시지부	금촌지점	214801
서울가정법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법조타운지점	230
서울행정법원			”	법조타운지점	220
인천지방법원			”	인천법원지점	240
		강 화	”	강화지점	240811
	부 천		”	부천법원지점	241
		김 포	” 또는 우리은행 김포지점	김포금융센터지점	240812
수원지방법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수원법원지점	250
		용 인	”	용인지점	250823
		오 산	” 또는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송탄금융센터지점	250824
	안 산		신한은행 전국 점포	안산법원지점	250826
		광 명	”	하안중앙지점	250825
	성 남		” 또는 우리은행 성남지점	성남지점	251
		광 주	신한은행 전국 점포	경기광주 금융센터지점	251827
	여 주		” 또는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이천금융센터지점	252
		이 천	” 또는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	”	252829
		양 평	” 또는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	구리금융센터지점	252828
	평 택		신한은행 전국 점포	평택금융센터지점	253
		안 성	”	안성금융센터지점	250821
	안 양		”	안양법원지점	254
춘천지방법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춘천지점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지점	260
		홍 천	신한은행 전국 점포	홍천지점	260842
		양 구	” 또는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지점	260843
		인 제	” 또는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속초지점	260841
		화 천	” 또는 NH농협은행 화천군지부	강원영업부 금융센터지점	260844
	강 릉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강릉지점	강릉중앙 금융센터지점	261
		동 해	” 또는 우리은행 동해지점	동해지점	261846
		삼 척	신한은행 전국 점포	삼척지점	261845
	원 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주지점	원주금융센터지점	262
		횡 성	” 또는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	”	262847
	속 초		” 또는 우리은행 속초지점	속초지점	263
		양 양	신한은행 전국 점포	양양지점	263849
		고 성	” 또는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속초지점	263848

명칭			수 납 은 행	관 리 은 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영 월		신한은행 전국 점포	영월지점	264
		정 선	" 또는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	"	264851
		태 백	신한은행 전국 점포	태백지점	264852
		평 창	" 또는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영월지점	264853
대전지방법원			" 또는 하나은행 대전법원지점	대전법원지점	280
		세종특별자치	" 또는 하나은행 조치원지점	천안법원지점	280871
		금 산	" 또는 하나은행 금산지점	대전법원지점	280872
		홍 성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성지점	"	281
		서 천	" 또는 NH농협은행 장항지점	군산지점	281873
		보 령	" 또는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대전법원지점	281874
		예 산	" 또는 하나은행 예산지점	천안법원지점	281875
		논 산	" 또는 하나은행 논산지원지점	대전법원지점	282
		부 여	" 또는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	"	282876
		천 안	신한은행 전국 점포	천안법원지점	283
		아 산	"	온양금융센터지점	283877
		공 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공주지점	대전법원지점	284
		청 양	" 또는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온양금융센터지점	284878
		서 산	" 또는 하나은행 서산지원지점	서산지점	285
		당 진	신한은행 전국 점포	당진지점	285881
		태 안	" 또는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서산지점	285879
대전가정법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대전법원지점	286
		홍 성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성지점	"	292
		논 산	" 또는 하나은행 논산지원지점	"	293
		천 안	신한은행 전국 점포	천안법원지점	294
		공 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공주지점	대전법원지점	295
		서 산	" 또는 하나은행 서산지원지점	서산지점	296
청주지방법원			신한은행 전국 점포	청주법원지점	270
		괴 산	" 또는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	증평지점	270862
		보 은	" 또는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	충북영업부 금융센터지점	270861
		진 천	" 또는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	진천지점	270863
		충 주	" 또는 우리은행 충주지점	충주금융센터지점	271
		음 성	" 또는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	"	271864
		제 천	신한은행 전국 점포	제천지점	272
		단 양	" 또는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	270865
		영 동	" 또는	대전법원지점	273

명칭			수 납 은 행	관 리 은 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			
		옥 천	" 또는 NH농협은행 옥천군지부	"	273866	
대구지방법원			" 또는 대구은행 법원지점	대구법원지점	310	
	서 부		" 또는 대구은행 서부지원지점	"	320	
		칠 곡	" 또는 대구은행 왜관지점	"	310893	
		경 산	" 또는 NH농협은행 경산시지부	"	310895	
		청 도	" 또는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	"	310891	
		영 천	" 또는 NH농협은행 영천중앙지점	"	310892	
		성 주	" 또는 NH농협은행 성주군지부	"	310894	
		고 령	" 또는 NH농협은행 고령군지부	"	310896	
		안 동	신한은행 전국 점포	안동지점	311	
		영 주	" 또는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	영주지점	311897	
		봉 화	" 또는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	"	311898	
		경 주	신한은행 전국 점포	경주금융센터지점	312	
		포 향	" 또는 우리은행 포항북지점	장성동지점	317	
		김 천	신한은행 전국 점포	김천지점	313	
			구 미	"	구미지점	313901
		상 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주지점	대구법원지점	314	
		문 경	" 또는 NH농협은행 문경시지부	영주지점	314903	
		예 천	" 또는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	"	314902	
		의 성	" 또는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	대구법원지점	315	
		청 송	" 또는 NH농협은행 청송군지부	안동지점	315904	
	군 위	" 또는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구미지점	315905		
	영 덕	" 또는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	대구법원지점	316		
	울 진	" 또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포항지점	316906		
	영 양	" 또는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	안동지점	316907		
대구가정법원			" 또는 대구은행 서부지원지점	대구법원지점	318	
	안 동		신한은행 전국 점포	안동지점	399	
	경 주		"	경주금융센터지점	390	
	포 향		" 또는 우리은행 포항북지점	장성동지점	395	
	김 천		신한은행 전국 점포	김천지점	391	
	상 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주지점	대구법원지점	392	
	의 성		" 또는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	"	393	
	영 덕		" 또는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	"	394	
부산지방법원			" 또는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	부산법조타운지점	410	
	동 부		신한은행 전국 점포	부산법조타운지점	412	

명칭			수 납 은 행	관 리 은 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부산가정법원			” 또는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	부산법조타운지점	413
울산지방법원			” 또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	울산법원지점	411
		양 산	신한은행 전국 점포	양산금융센터지점	411911
창원지방법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 경남은행 창원법원지점	창원중앙지점	420
		창원남부	” 또는 경남은행 창원남부시법원지점	”	420922
		김 해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김해지점	김해금융센터지점	420923
		마 산	” 또는 경남은행 창원법원지점	마산금융센터지점	431
		의 령	” 또는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진주중앙 금융센터지점	420924
		함 안	” 또는 경남은행 함안지점	창원중앙지점	420921
		진 주	” 또는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	”	421
		하 동	” 또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	421926
		사 천	” 또는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	”	421927
		남 해	” 또는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	421928
		산 청	” 또는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	”	421929
		통 영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영지점	마산역지점	422
		거 제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제지점	”	422931
		고 성	” 또는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	422932
		밀 양	” 또는 NH농협은행 삼문동지점	”	423
		창 념	” 또는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423933
		거 창	” 또는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	424
		합 천	” 또는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424934
		합 양	” 또는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진주중앙 금융센터지점	424935
	광주지방법원			” 또는 광주은행 법원지점	광주법원지점
		곡 성	” 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	510941
		영 광	” 또는 광주은행 영광지점	”	510942
		나 주	” 또는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510943
		장 성	” 또는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	510944
		화 순	” 또는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	”	510945
		담 양	” 또는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	”	510946
		목 포	신한은행 전국 점포	목포금융센터지점	511
		영 암	” 또는 광주은행 영암지점	”	511948
		무 안	” 또는 광주은행 무안지점	”	511949

명칭			수 납 은 행	관 리 은 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함 평	” 또는 광주은행 함평지점	”	511947
		장 흥	” 또는 광주은행 장흥지점	광주법원지점	512
		강 진	” 또는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목포금융센터지점	512951
		순 천	신한은행 전국 점포	순천법원지점	513
		보 성	” 또는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	513952
		여 수	신한은행 전국 점포	여천지점	513954
		고 흥	” 또는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	순천법원지점	513953
		광 양	신한은행 전국 점포	광양지점	513956
		구 례	” 또는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순천법원지점	513955
		해 남	” 또는 광주은행 해남지점	광주법원지점	514
		완 도	” 또는 광주은행 완도지점	”	514958
			진 도	” 또는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목포금융센터지점
광주가정법원			” 또는 광주은행 법원지점	광주법원지점	515
		목 포	신한은행 전국 점포	목포금융센터지점	599
		장 흥	” 또는 광주은행 장흥지점	광주법원지점	590
		순 천	신한은행 전국 점포	순천법원지점	591
		해 남	” 또는 광주은행 해남지점	광주법원지점	592
전주지방법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주지점, 전북은행 전주법원영업점	전주지점	520
		김 제	” 또는 전북은행 김제지점	익산중앙지점	520972
		진 안	” 또는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주지점	520971
		무 주	” 또는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대전법원지점	520973
		임 실	” 또는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	전주지점	520974
		군 산	신한은행 전국 점포	군산지점	521
		익 산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익산지점	익산중앙지점	521975
		정 읍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정읍지점	전주지점	522
		부 안	” 또는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군산지점	522976
		고 창	” 또는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	522977
		남 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남원지점	전주지점	523
		장 수	” 또는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	”	523978
		순 창	” 또는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	523979
제주지방법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제주중앙지점	530
		서귀포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	530991

[별지 제1호 서식]

\* 예납이란 : 사건접수시(신청,항고,항소,상소,종국된 사건,제3자의 송달신청 등)납부→사건번호 미기재  
 \* 주납이란 : 사건진행중 송달료 추가납부요청이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우편료→사건번호 기재

송 달 료(예납·주납) 납 부 서

은행번호

법원제출용

법원코드				

※납부자께서는 이면 유의사항을 확인  
 하신 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 납 부 용 당 사 란 자	법원명				사건번호					
	성명				금액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① 신한은행계좌입금	신한은행	지점	계좌번호					
② 타은행계좌입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법원 사용란	사건번호	연도	사건부호	진행번호						
	전산등록	사건등록 ㉠	이송등록 ㉠	수이송등록 ㉠	재배당등록 ㉠	기타( ) ㉠				

※환급계좌를 반드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재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귀중

납부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송달료(예납·추납) 신용카드등 납부서(법원제출용)

■ 송달료(예납·추납) 납부정보

은행번호:

납부당사자사용란	법원명			사건번호		
	성명			금액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결제확인정보

송달료금액		납부대행수수료	
결제금액		할부개월수	
납부카드		카드번호	

법원 사용란	사건번호	연도	사건번호			진행번호					
	전산등록	사건등록(인)	이송등록(인)	수이송등록(인)	재배당등록(인)	기타( ) (인)					

위와 같이 송달료(예납·추납)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합니다.

법원                      지원    귀중

. . .

납부자 \_\_\_\_\_ (서명)

- ※ 납부당사자사용란에는 소(상소)의 제기나 각종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잔액환급계좌번호는 송달료 잔액의 간편한 환급을 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예납이란 : 사건접수시(신청, 항고, 항소, 상소, 종국된 사건, 제3자의 송달신청 등)납부→사건번호 미기재  
 \* 추납이란 : 사건진행중 송달료 추가납부요청이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우편료→사건번호 기재

**송 달 료(예납·추납) 영 수 증**

은행번호

사 납 부	법원명				사건번호			
	성 명				금 액			
용 당 사 란 자	주소					우편번호		
	잔액환급 계좌번호	①신한은행계좌입금	신한은행	지점	계좌번호			
		②타은행계좌입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전화번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잔액환급계좌번호가 요청하신 내용대로 전산입력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귀중                  은행                  지점



[별지 제3호 서식]

송달료 반환 신청 및 확인서 (신용카드등 납부용)

■ 송달료(예납·추납) 반환 신청정보

기 재 란	법원명		사건번호	
	성명		금액	
	주소		우편번호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해당법원에서 사건번호 연결 및 잔액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정정(취소)가 불가능한 위 사건에 대한 송달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_\_\_\_\_ (서명)

위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오니, 해당 은행에서는 송달료 반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료(예납·추납) 반환 확인정보

법원명		사건번호	
성명		신용카드등 납부금액	
반환사유			

년 월 일

00법원 00지원 법원사무관 \_\_\_\_\_ (직인)